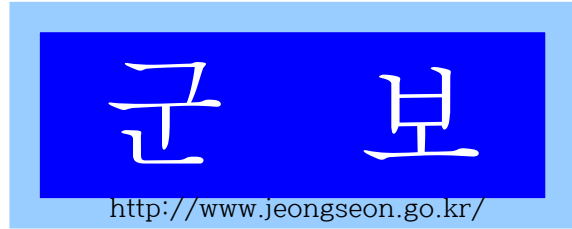




정 선 군

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제446호 2018. 4. 24. (화)

【고 시】

- 정선군 고시 제2018-45호 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.....5
- 정선군 고시 제2018-49호 도로구역 결정(변경)의 고시.....12

【공 고】

- 정선군 공고 제2018-48호 도로의 노선지정(변경)에 관한 공고.....20
- 정선군 공고 제2018-459호 정선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.....29

□ 발행 :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(전화:560-2213, FAX:560-2592)

고 시

정선군 고시 제2018-45호

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『도로법』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였음을 고시하고,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 및 같은 법에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8년 4월 12일

정 선 군 수

1. 도로구역 결정(변경)내용

구분	종류	노선번호	노선명	위치	면적	기점	종점	주요 통과지	총연장 (사업연장)
변경	군도	2호선	방제~북실 (은향골)	정선군 남면 광덕리 일월	10,053 m ²	정선군 남 면 광덕리 1065-1	정선군 남 면 광덕리 1082-1	-	47.38km (0.54km)

2. 도로구역 결정(변경) 사유 : 군도2호(은향골) 도로개설공사

3. 사업시행자 : 정선군수

4. 사업시행기간 : 2018. 4. ~ 2019. 8.

5. 설계도서 공람기간 및 장소

○ 공람기간 : 사업시행기간

○ 장 소 : 정선군 안전건설과(☎033-560-2485, 248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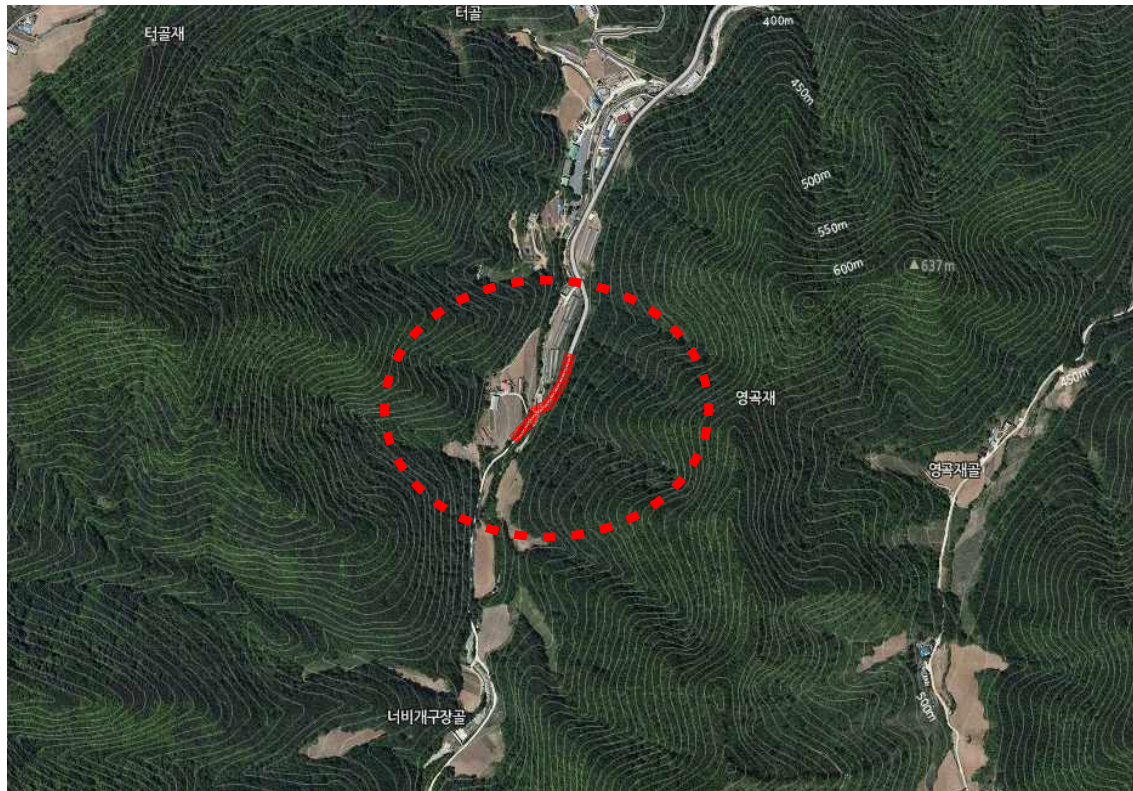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·건물등의 세목 : 별첨

7.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: 붙임

○ 노선명 : 군도2호(은향골)

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유자		이해관계인			비고
		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	
1	남면 광덕리	1065- 1	도	434	57	국	정선군				
2	"	1065- 3	임	97	97	전*경	남면 광덕리 ****				
3	"	산 218-3	임	913	913	삼척***** **	서울 영포구 여의동 ***				
4	"	1069- 1	전	218	218	공	정선군				
5	"	1070- 1	임	1,655	1,411	공	정선군				
6	"	산219	임	80,331	1,561	삼척***** **	서울 영포구 여의동 ***				
7	"	1071	전	370	245	국	국토교통부				
9	"	1077- 1	전	27	27	이*규	정선군 남면 광덕리 ****				
10	"	1078	전	248	248	공	정선군				
11	"	1076- 2	전	183	183	이*규	정선군 남면 광덕리 ****				
12	"	1080- 1	도	1,108	727	국	국토교통부				
13	"	산 259-1	임	222	222	이*규	정선군 남면 광덕리 ****				
14	"	1079- 1	전	101	101	신*중	인천 부평구 십정동 ***				
15	"	산256	임	69,223	2,257	일본인.창 시명등	미북구				
16	"	1080	임	413	413	이*규	정선군 남면 광덕리 ****				
17	"	1081	전	261	261	전*탁	정선군 남면 광덕리 ****				
18	"	1082- 1	전	1,112	1,112	이*규	정선군 남면 광덕리 ****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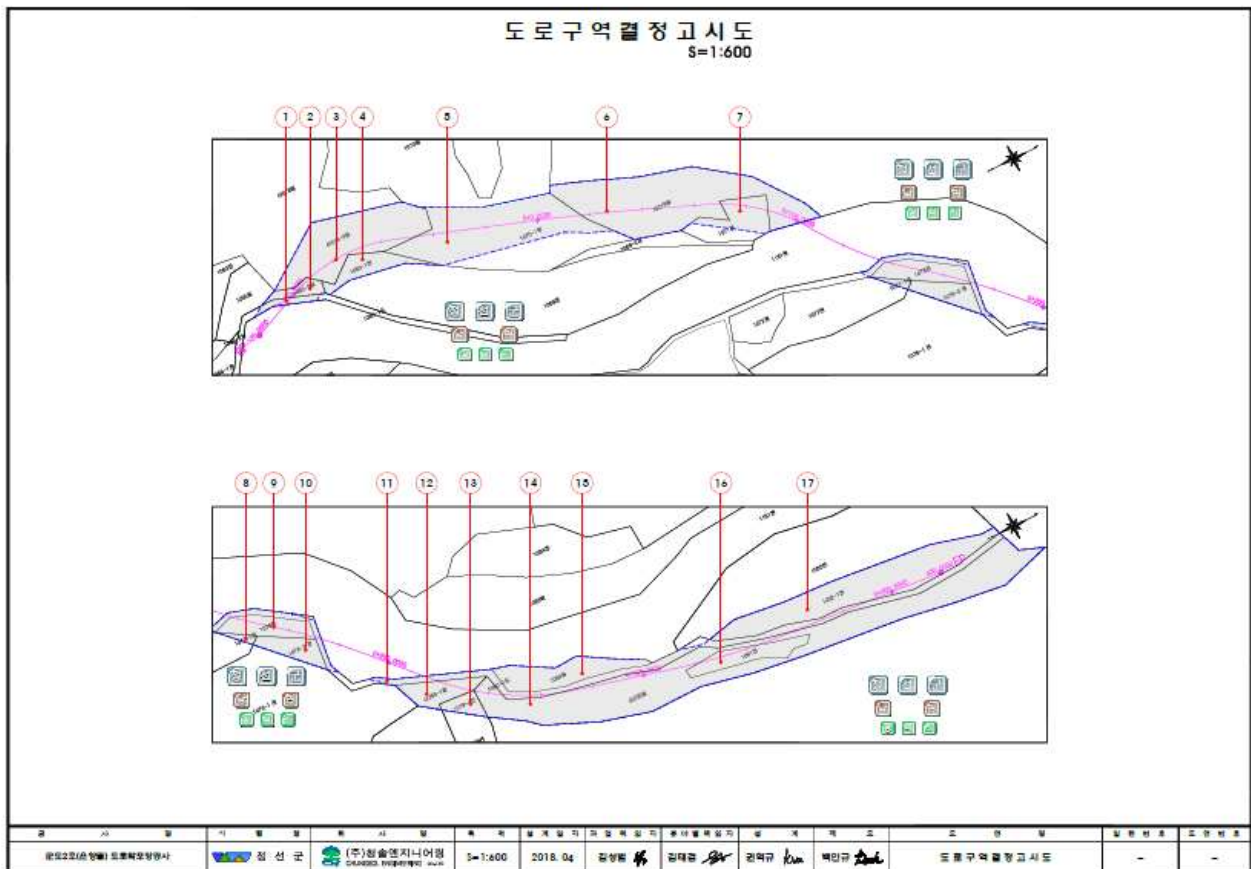
□ 위치도 및 전경사진[군도 2호(은향골) 확.포장]



군도 2호(은향골) 확.포장공사 위치도



군도 2호(은향골) 확.포장공사 전경사진



정선군 고시 제2018-49호

도로구역 결정(변경)의 고시

『도로법』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였음을 고시하고,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8년 4월 13일

정 선 군 수

1. 도로구역 결정(변경)내용

구분	종류	노선번호	노선명	위치	면적	기점	종점	주요 통과지	총연장 (사업연장)
변경	군도	3호선	용탄~숙암	정선읍 덕송리	1,494	정선읍 용탄리 667-2	북평면 북평리 521-5	-	23.3km (유지관리)
변경	군도	6호선	예미~용탄	정선읍 굴암리	3,812	신동읍 예미리 658-2	정선읍 용탄리 산167-10	-	29.76km (유지관리)
변경	군도	7호선	천포~덕암	화암면 건천리 덕암리	3,496	신동읍 천포리 392-5	임계면 덕암리 336-10	-	37.69km (유지관리)
변경	군도	9호선	유평~구절	임계면 반천리	9,081	남 면 유평리 740	여량면 구절리 429-2	-	60.25km (유지관리)

2. 도로구역 결정(변경) 사유 : 군도3호(용탄~숙암), 군도6호(예미~용탄), 군도7호(천포~덕암), 군도9호(유평~구절) 도로 유지관리

3. 사업시행자 : 정선군수

4. 사업시행기간 : 2018. 4월 ~ 계속

5. 설계도서 공람기간 및 장소

○ 공람기간 : 사업시행기간

○ 장 소 : 정선군 안전건설과(☎033-560-2485, 2488)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·건물등의 세목 : 별첨

7.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: 붙임

○ 노선명 : 군도3호(용탄~숙암)

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유자		이해관계인			비고
		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	
1	정선읍 덕송리	산 31-5	임야	1,074	1,074	국	산림청				
2	"	산 32-1	임야	420	420	국	산림청				

○ 노선명 : 군도6호(예미~용탄)

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유자		이해관계인			비고
		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	
1	정선읍 팔암리	산 200-2	임야	2,014	2,014	국	산림청				
2	"	산 200-3	임야	1,041	1,041	국	산림청				
3	"	산 200-4	임야	757	757	국	산림청				

○ 노선명 : 군도7호(천포~덕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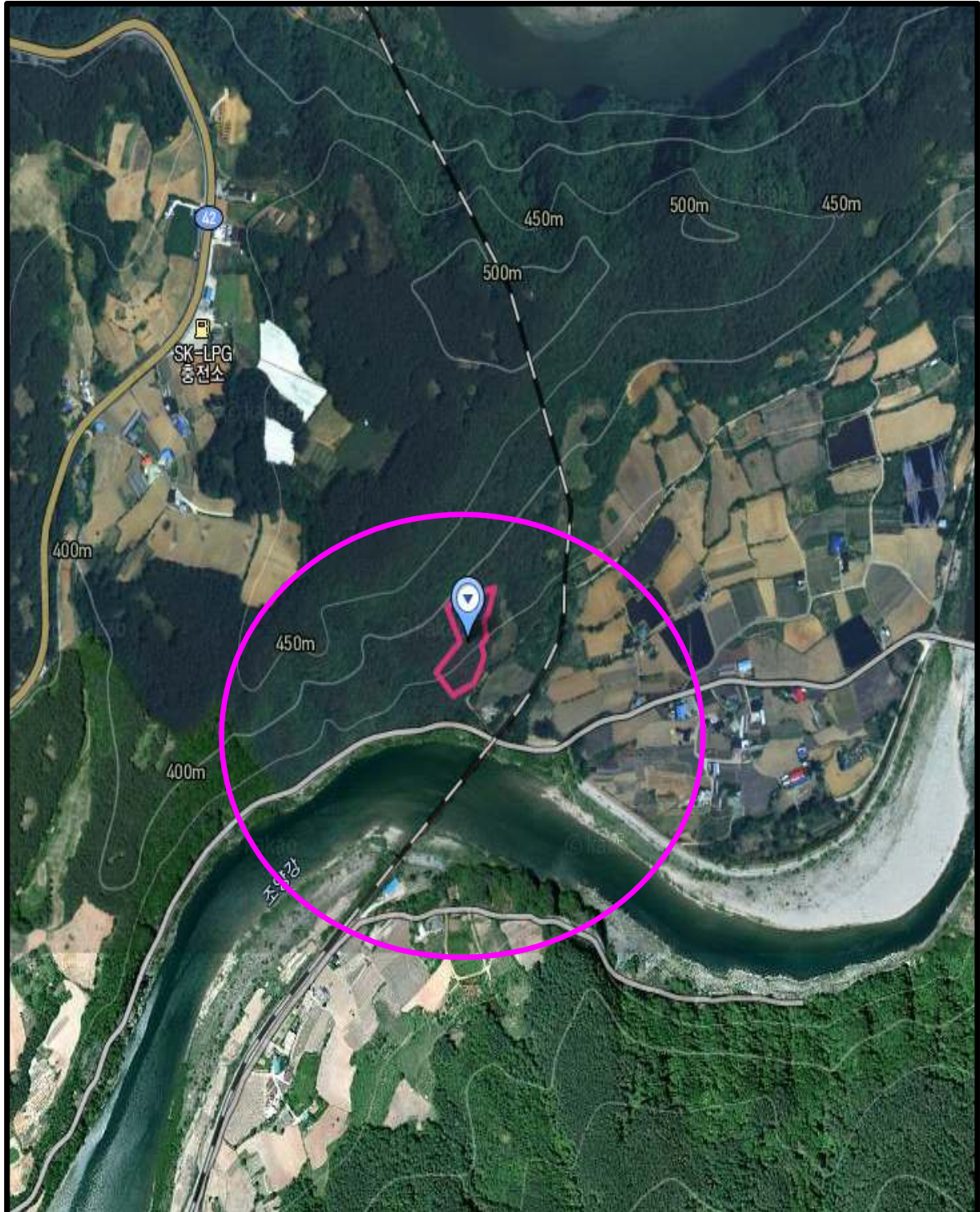
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유자		이해관계인			비고
		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	
1	화암면 건천리	125-4	임야	25	25	국	산림청				
2	"	125-5	임야	1,979	1,979	국	산림청				
2	"	산 240-1	임야	515	515	국	산림청				
3	덕암리	394-9	임야	977	977	국	산림청				

○ 노선명 : 군도9호(유평~구절)

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유자		이해관계인			비고
		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	
1	임계면 반천리	산 280-2	임야	9,081	9,081	국	산림청				
2											

위 치 도

○ 노선명 : 군도3호(용탄~숙암)[정선읍 덕송리 산31-5, 산32-5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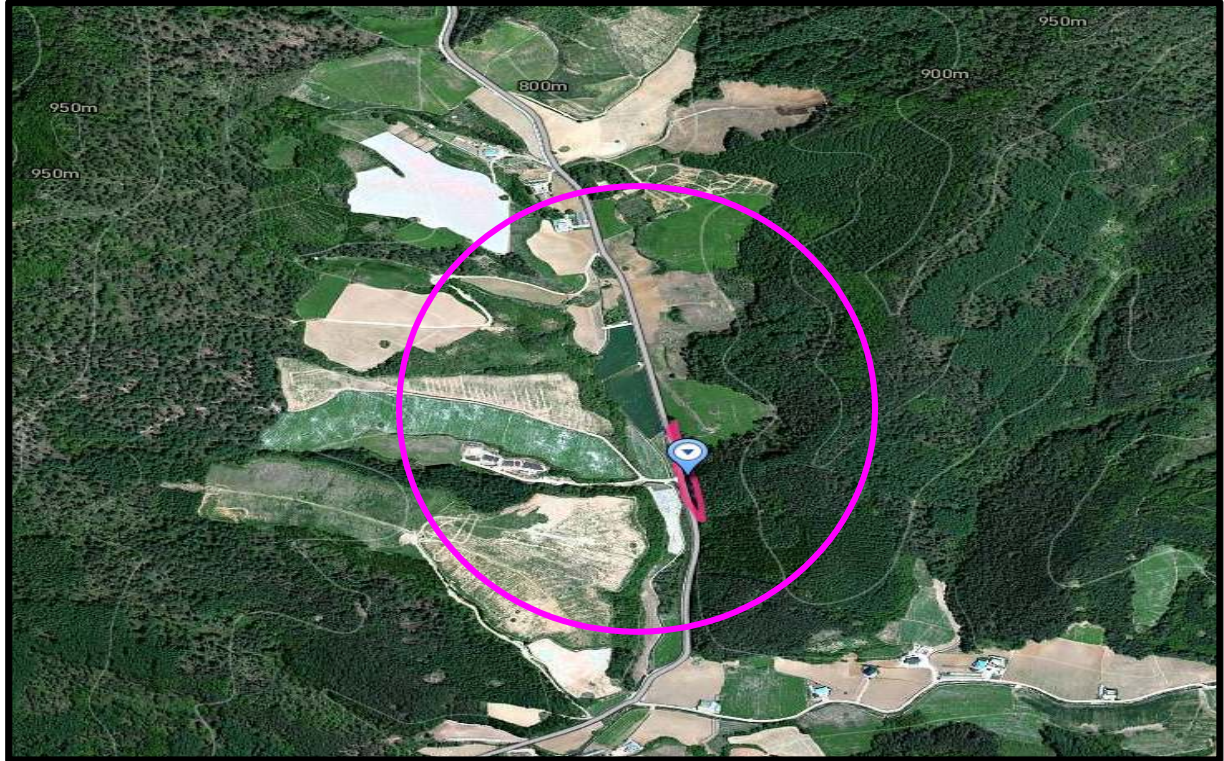
위 치 도

○ 노선명 : 군도6호(예미~용탄)[정선읍 굴암리 산200-2, 산200-3, 산200-4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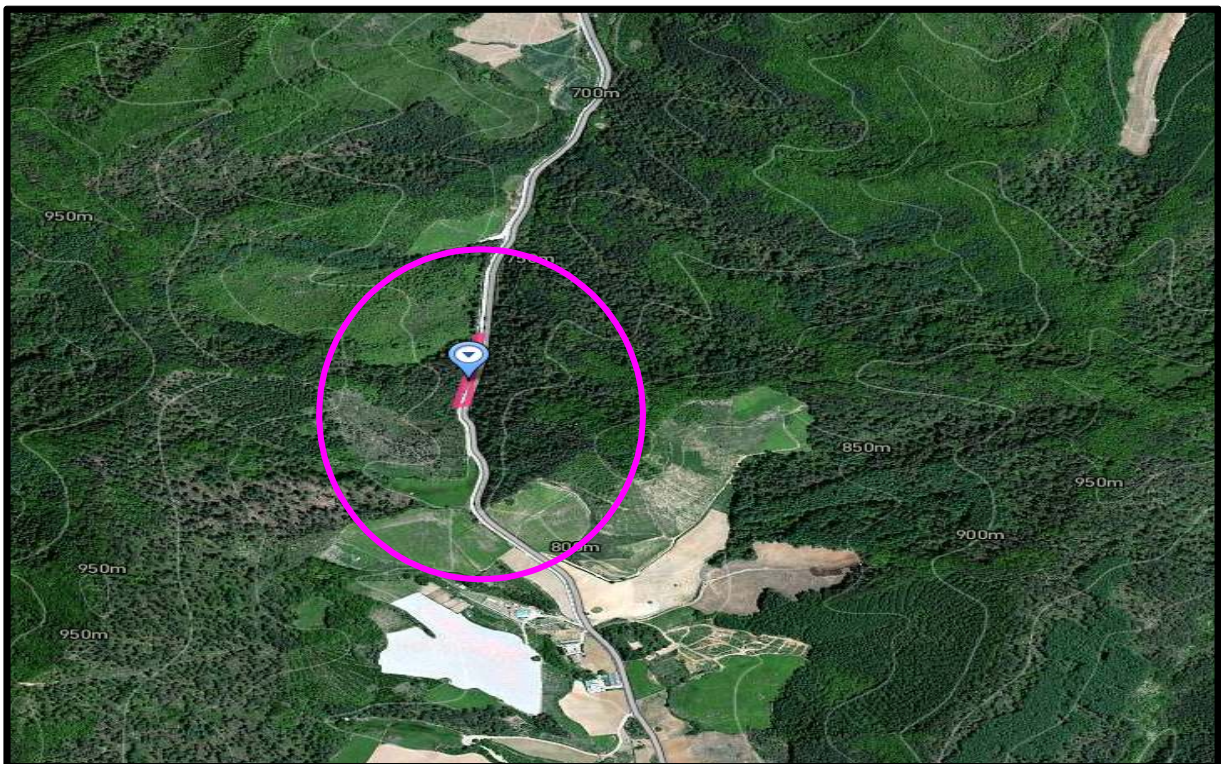


위 치 도

○ 노선명 : 군도7호(천포~덕암)[화암면 건천리 125-4, 125-5, 산240-1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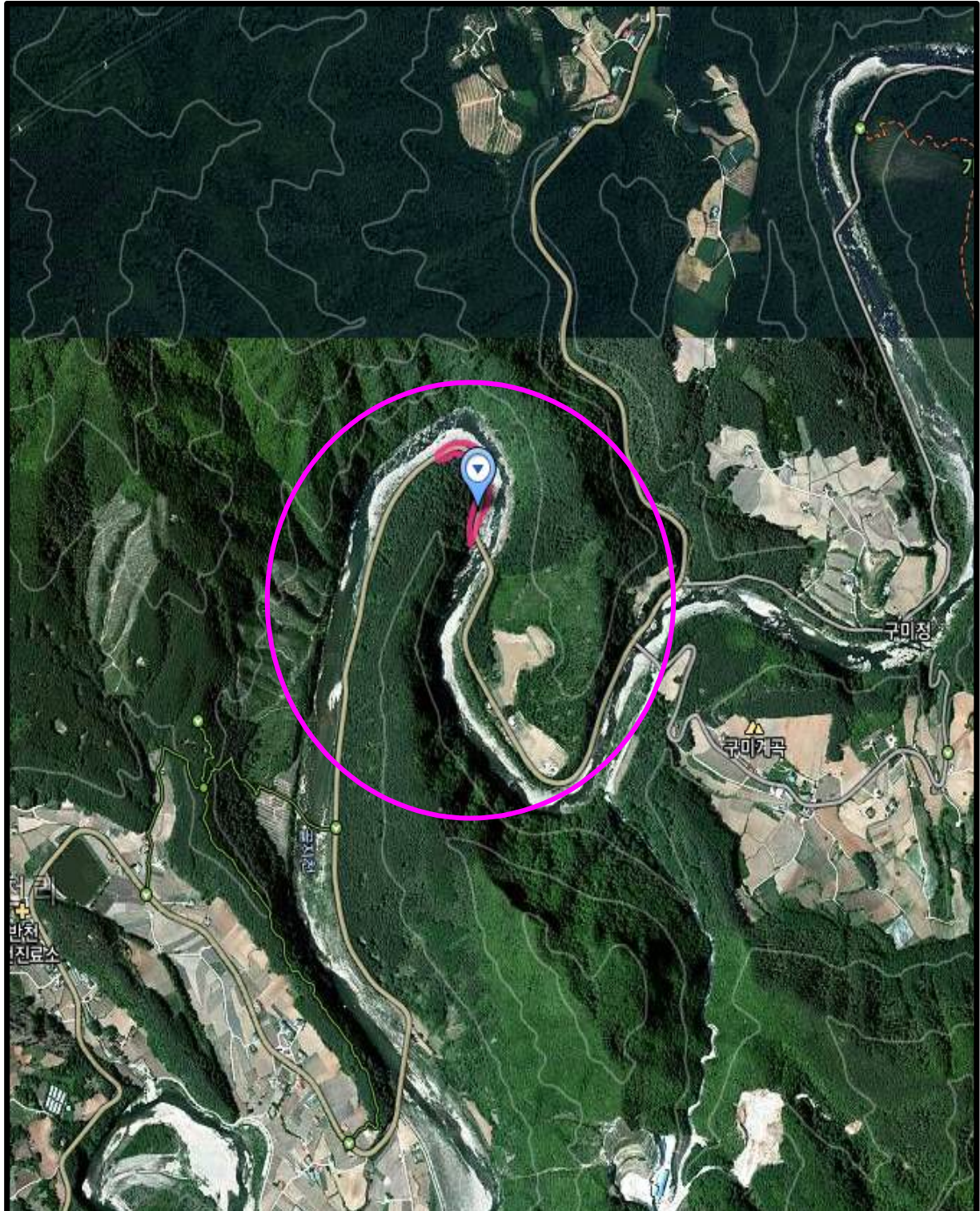


○ 노선명 : 군도7호(천포~덕암)[임계면 덕암리 394-9]



위 치 도

○ 노선명 : 군도9호(유평~구절)[임계면 반천리 산280-2]



공 고

정선군 공고 제2018-48호

도로의 노선지정(변경)에 관한 공고

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(변경)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18년 4월 13일

정 선 군 수

1. 노선지정(변경)내용

읍면	도로의 종류	노선명	노선 번호	총연장		총연장 (km)	주 요 경 과 지	개발계획		지정(폐지· 변경)사유
				기점	종점			도로 너비 (m)	포장 너비 (m)	
정선읍	면도	신덕선	정선 102호	신월리 5-16	덕우리 13-1	10.02		-	-	도 로 유 지 관 리
북평면	리도	북평선	북평 202호	북평리 62-3	북평리 산1	3.69		-	-	도 로 유 지 관 리
임계면	리도	도전장 아선	임계 201호	가목리 61-5	가목리 산8-1	8.23		-	-	도 로 유 지 관 리
	리도	송반선	임계 213호	송계리 산186-7 6	반천리 9-1	5.36		-	-	도 로 유 지 관 리

2. 사 업 시 행 자 : 정선군수(안전건설과)

3. 사업시행기간 : 2018. 4월 ~ 계속

4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물건 조서·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
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: 붙임

5. 설계도서, 자금계획, 지형도면 : 실음생략

◦설계도서, 자금계획, 지형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

- 공람기간 : 사업시행 기간내
- 공람장소 : 정선군청 안전건설과
- 도로의 노선지정도 및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안전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

노선명 : 정선읍 면도 102호

일련 번호	소재지	지 번	지 목	공부상 면 적	편입 면적	소 유 자			비 고
				(㎡)	(㎡)	성명	주 소	지분	
1	정선읍 덕우리	산17-10	임	541	541	산림청			
계		1필지		541	541				

노선명 : 북평면 리도 202호

일련 번호	소재지	지 번	지 목	공부상 면 적	편입 면적	소 유 자			비 고
				(㎡)	(㎡)	성명	주 소	지분	
1	북평면 북평리	436-4	임	711	711	산림청			
2	“	436-7	임	20	20	“			
3	“	436-8	임	29	29	“			
4	“	439-1	임	864	864	“			
5	“	439-2	임	857	857	“			
6	“	439-3	임	260	260	“			
7	“	444-1	임	38	38	“			
8	“	444-2	임	212	212	“			
9	“	444-5	임	217	217	“			
10	“	444-6	임	93	93	“			
11	“	445-2	임	2,053	2,053	“			
12	“	445-7	임	317	317	“			
13	“	453-3	임	226	226	“			
계		13필지		5,897	5,897				

노선명 : 임계면 리도 201호

일련번호	소재지	지 번	지목	공부상 면 적	편입 면적	소 유 자			비고
				(㎡)	(㎡)	성명	주 소	지분	
1	임계면 가목리	53-4	임	6,379	6,379	산림청			
계		1필지		6,379	6,379				

노선명 : 임계면 리도 213호

일련번호	소재지	지 번	지목	공부상 면 적	편입 면적	소 유 자			비고
				(㎡)	(㎡)	성명	주 소	지분	
1	임계면 송계리	산186-7 6	임	755	755	산림청			
2	“	산186-7 7	임	285	285	“			
3	“	산190-5	임	11,882	11,882	“			
4	임계면 반천리	산1-11	임	9,468	9,468	“			
5	“	산1-12	임	4,446	4,446	“			
6	“	산1-13	임	11,437	11,437	“			
7	“	산4-2	임	1,623	1,623	“			
8									
9									
10									
11									
12									
13									
계		7필지		39,896	39,896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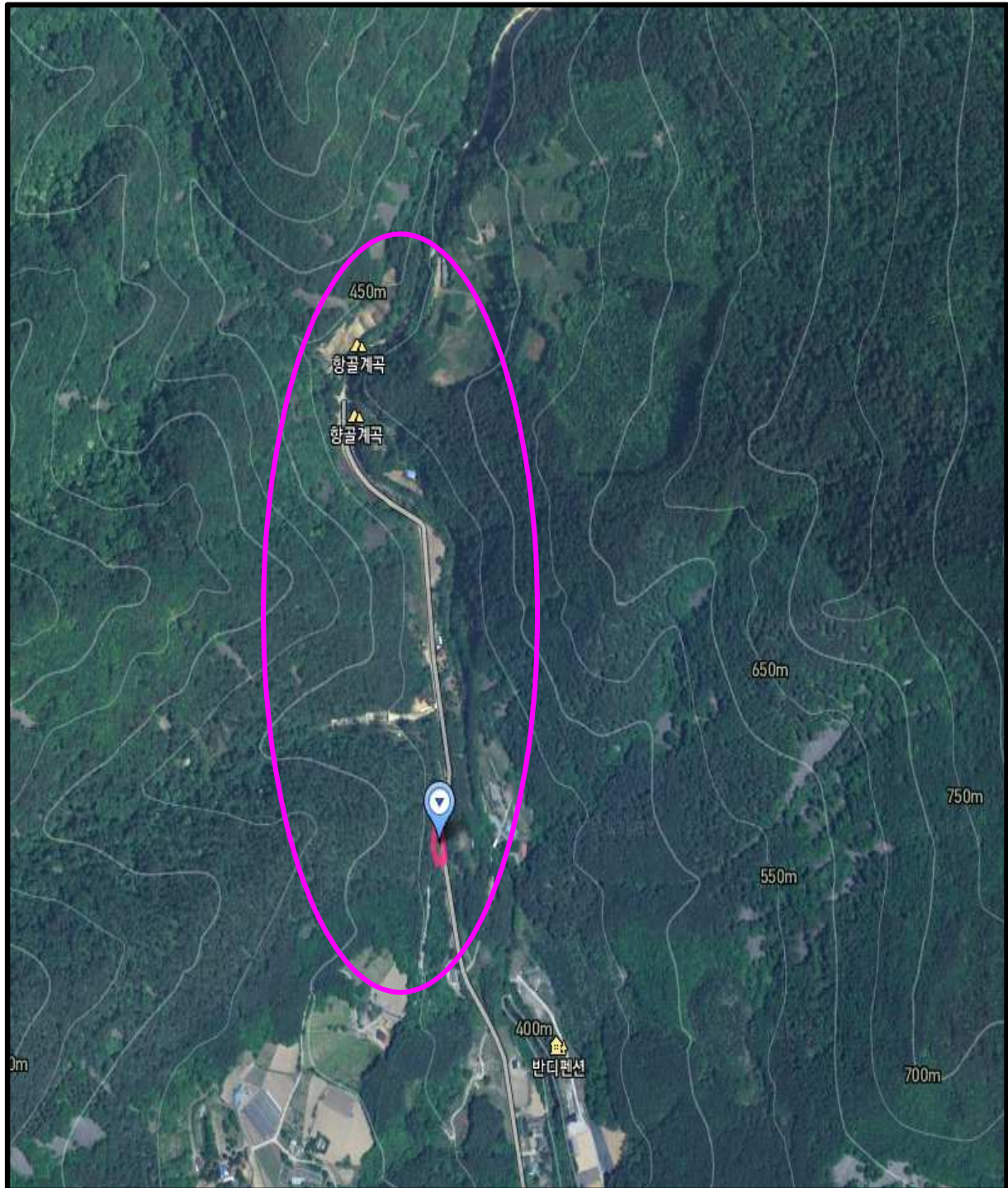
노 선 위 치 도

노선명 : 정선읍 읍도 102호[정선읍 덕우리 산17-10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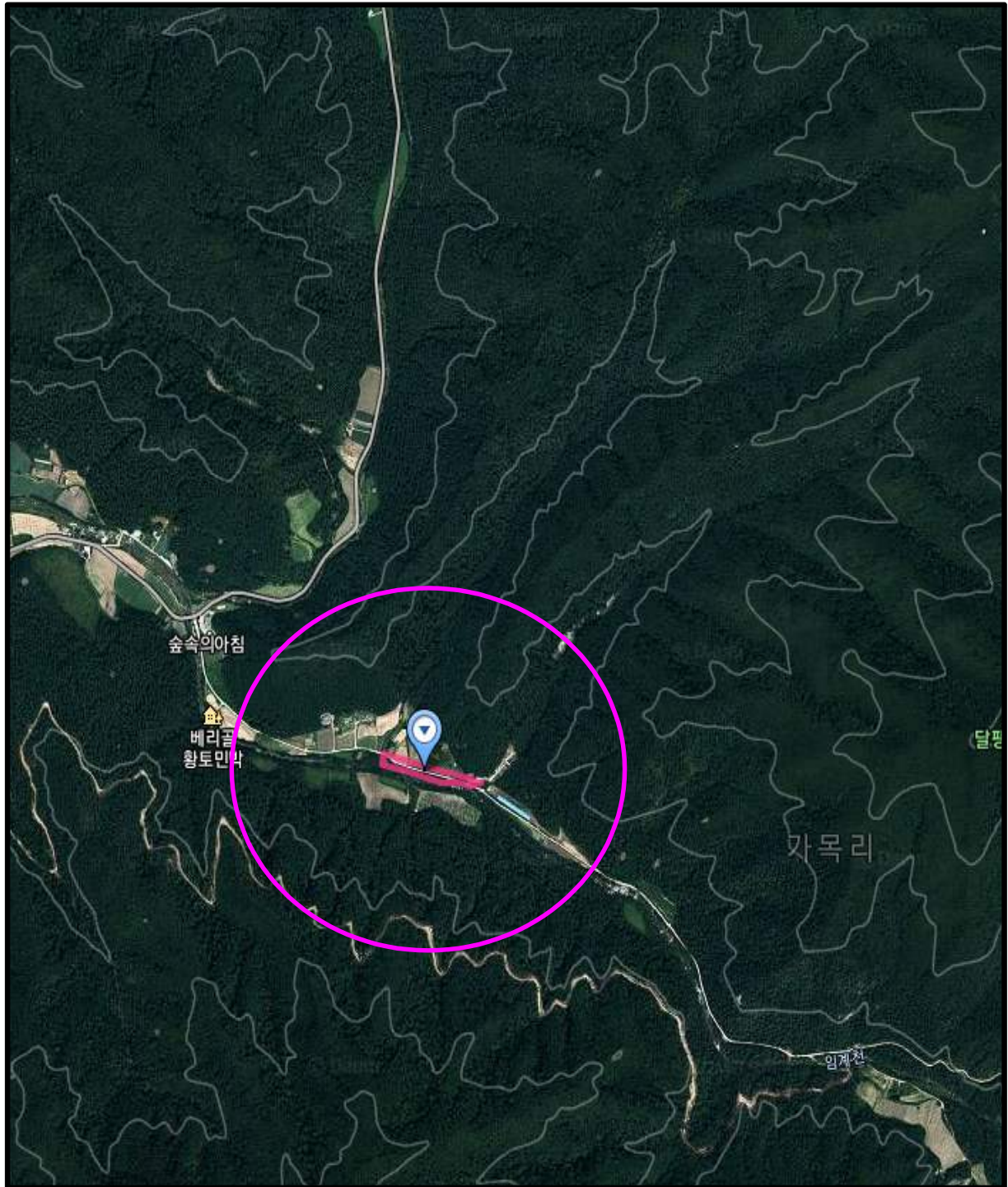
노 선 위 치 도

노선명 : 북평면 리도 202호[북평면 북평리 436-4~453-3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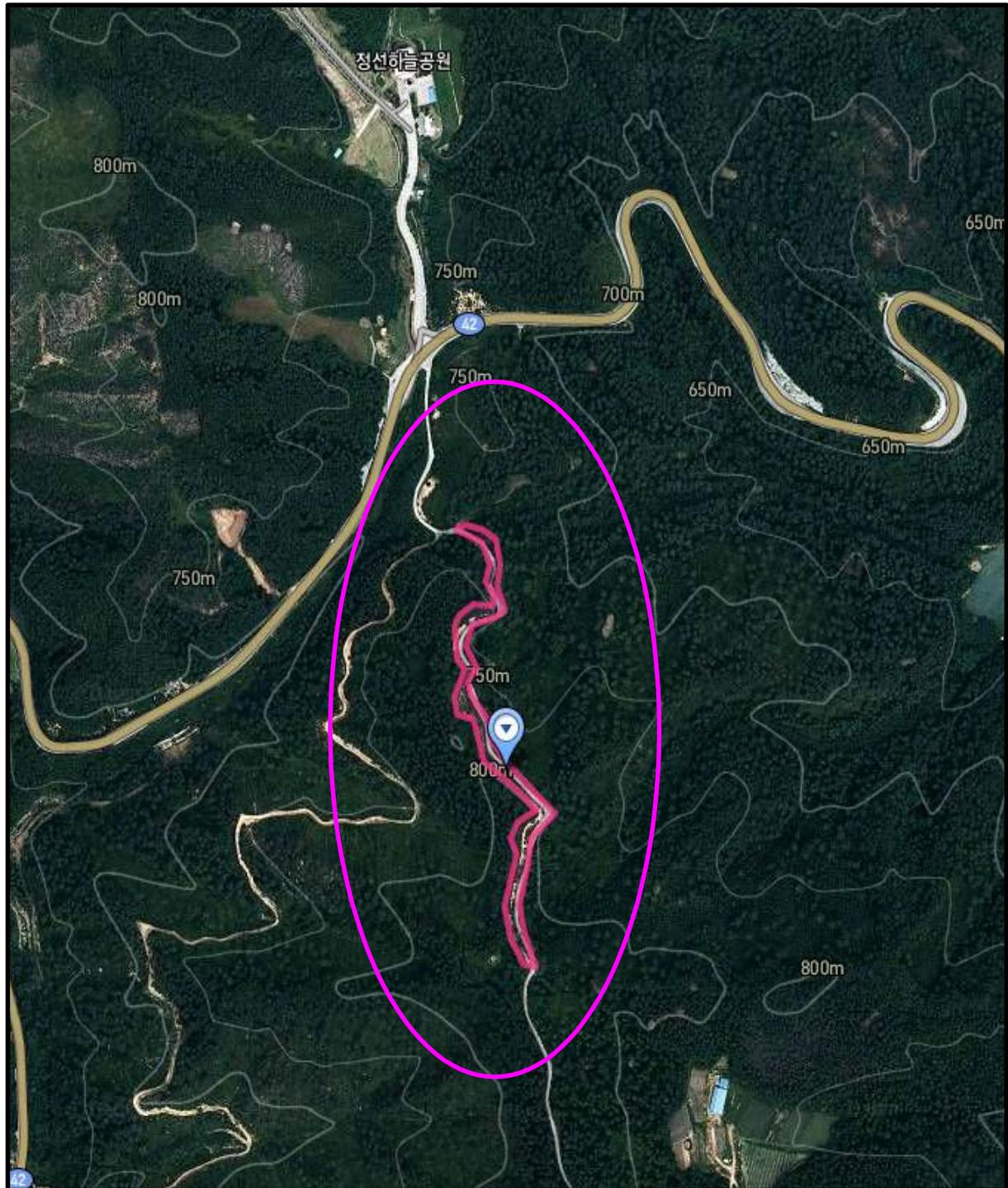
노 선 위 치 도

노선명 : 임계면 리도 201호[임계면 가목리 53-4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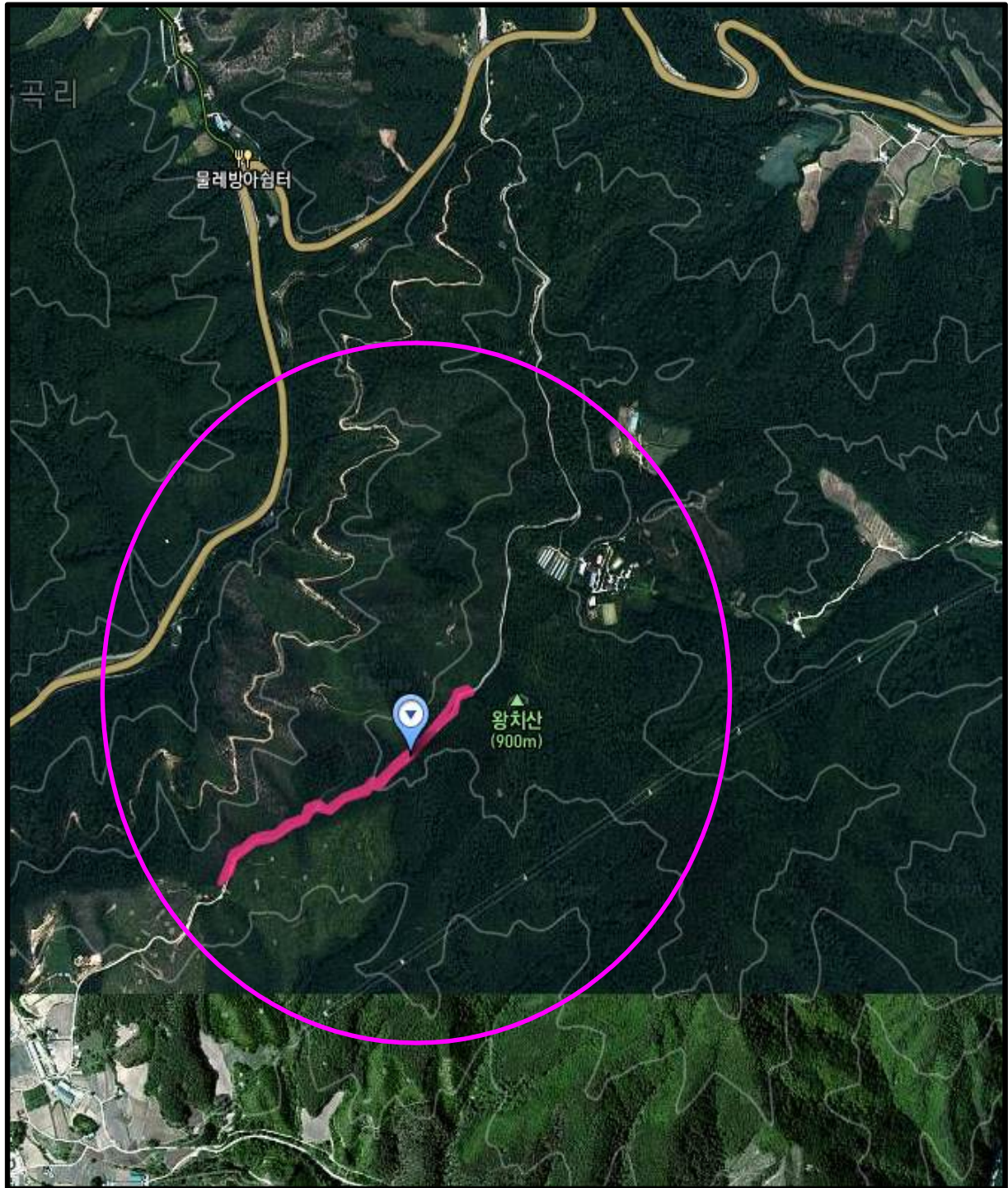
노 선 위 치 도

노선명 : 임계면 리도 213호[임계면 송계리 산186-76, 산186-77, 산190-5]



노 선 위 치 도

노선명 : 임계면 리도 213호[임계면 반천리 산1-11, 산1-12, 산1-13, 산4-2]



정선군 공고 제2018-459호

정선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정선군 지명위원회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8년 4월 23일

정 선 군 수

1. 개정이유

- 가. 상위법령인 『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』에 위반되는 사항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
- 나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

2. 주요내용

- 가. 관련법 명칭을 정비함.(안 제1조)
 -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
 - =>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
- 나. 상위법령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.
 -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.(안 제3조제2항)
 - 부군수가 된다. =>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 - 간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.(안 제3조제5항)
 - 공간정보담당이 되며 =>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
 - 위원장이 표결권과 함께 “가부동수”인 경우 결정권까지 가질 시 실질적 1인 2표가 되어 민주주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따라 단서를 삭제함.(안 제6조제3항)
 - <삭제> 다만,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- 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조문을 정비함.
 - 심의 결정한다 => 심의·의결한다 (안 제2조)
 - 관할 구역 내 => 관할구역 (안 제2조제2호, 제7조제1항)
 - 임명 또는 => 임명하거나 (안 제3조제3항)

- 관계공무원 => 관계 공무원 (안 제3조제3항제1호)
- 포함 한 => 포함한 (안 제7조제1항)
- 지표물지명등 일체의 => 지표물 지명 등 모든 (안 제7조제1항)
- 지명중 => 지명 중 (안 제7조제2항)
- 또 는 => 또는 (안 제7조제2항)
- 인접지방 행정기관 소 속공무원 => 인접 시·군·구 소속 공무원
- 필요하 다고 => 필요하다고 (안 제7조제3항)

3. 입법예고기간 : 2018. 4. 23. ~ 2018. 5. 14.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4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(참조 : 민원봉사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 주소, 연락처
다. 기타 의견

<의견제출 및 연락처>

- 주 소 : (우)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
정선군청 민원봉사과
- 전 화 : 033-560-2183
- 팩 스 : 033-560-2407
- 이메일 : lcn03137@korea.kr

정선군 조례 제 호

정선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정선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1조”를 “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1조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심의 결정한다”를 “심의·의결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관할 구역 내”를 “관할구역”으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구성) ①정선군 지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위원장은 정선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.

1. 관계 공무원
2.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3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강원도 지명위원회(이하 “도 지명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촉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
⑤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,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.

제6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관할 구역 내”를 “관할구역”으로, “포함 한 자연지명,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”를 “포함한 자연지명, 지표물 지명 등 모든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명중”을 “지명 중”으로, “또 는”을 “또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인접지방 행정기관 소속공무원”을 “인접 시·군·구 소속 공무원”으로, “필요하 다 고”를 “필요하다고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정선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	제2조(기능) ----- ----- 심의 · 의결한다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	2. 관할구역----- -----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제3조(구성) 제3조(구성) ①정선군 지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	제3조(구성) ①정선군 지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②위원장은 정선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.	②위원장은 정선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	

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.

1. 관계공무원

2.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3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강원도 지명위원회(이하 “도 지명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촉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
⑤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, 간사는 공간정보담당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.

제6조(회의) ①·② (생략)

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7조(지명의 조사) ①제6조에 따

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.

1. 관계 공무원

2.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3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강원도 지명위원회(이하 “도 지명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촉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
⑤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,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.

제6조(회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-----

----- . <단서 삭제>

제7조(지명의 조사) ①-----

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 내
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 한
자연지명, 지표물지명등 일체의
지명을 조사한다.

②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
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, 변
천과정 등을 포함하여 지명중
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
명칭오류(제정 또는 변경으로
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) 또 는
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
조사한다.

③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
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
에 관계되는 인접지방 행정기관
소 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
참여할 수 있으며, 지명을 공동
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
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
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.

----- 관할구역-----
----- 포함한 자연지
명, 지표물 지명 등 모든 -----
-----.

②-----

----- 지명 중 -----

-- 또는-----
-----.

③-----

- 인접 시·군·구 소속 공무원

----- 필요하다고 -----

-.

관계법령 발췌

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

제91조 (지명의 결정) ①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, 변경과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두고, 시·도에 시·도 지명위원회를 두며, 시·군 또는 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를 둔다.

② 지명은 「지방자치법」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·의결로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시·군·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가 심의·의결하여 관할 시·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, 관할 시·도 지명위원회는 관할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·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,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·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·의결하여 결정한다.
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시·군·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·도 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·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,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·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·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하며, 둘 이상의 시·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지명위원회가 해당 시·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·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지명은 국가지명위원회가 심의·의결하여 결정하고,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⑥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시·도 지명위원회와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88조 (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)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시·도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시·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(특별시,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말한다)가 되고,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·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[개정 2013.6.11.]

③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,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시·도 지명위원회에서는 5명 이상으로 하고,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에서는 3명 이상으로 한다.

⑤ 시·도 지명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제8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·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은 시·도지사가,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은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각각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.

제89조 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국가지명위원회, 시·도 지명위원회 및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(이하 “지명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장은 해당 지명위원회를 대표하며,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0조 (회의) 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1조 (간사) ① 지명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는 간사 2명을 두고, 시·도 지명위원회 및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국가지명위원회의 간사는 국토지리정보원 및 국립해양조사원의 지명업무 및 해양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, 시·도 지명위원회 및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시·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.

제92조 (수당 등) ① 국가지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거나 제93조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시·도 지명위원회 및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·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93조 (현장조사 등)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이나 해양지명의 제정, 변경 또는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심의·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94조 (회의록)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
제96조 (운영세칙) 지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